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6
----------	-----

2009년 6월 29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8일, 김현기 의원 외 12인
-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09년 6월2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34조가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용료 감면내역을 조례상의 본문에 규정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법권을 확립하고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하여 포괄위임금지 등 상위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르게 개선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중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유사한 혐오시설인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의 경우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현실을 감안, 물재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고, 혐오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감면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현행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상에 규정함. (안 제34조 개정)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함. (안 제34조 제1항 제8호 개정)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본 개정안은 김현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2009.6.8일)하여 2009.6.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현행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행 하수도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전액면제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동 안과 같이 사용료 감면조항을 현행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할 경우 포괄위임금지 등의 상위법 정신과 일치하고 그동안 시장이 일방적으로 감면 대상 및 감면규모를 결정하던 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 물재생시설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개정하는 건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와, 유사시설물인 자원회수시설이 「폐촉법」에 의해 각종 혜택¹⁾을 받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를 전액 면제 하더라도 세수감소가 기존에 불과 약 3억57백만원 소폭 증가하는데 그쳐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표] 하수도사용료 전액 감면 시 혜택 세대수와 세수감소 예상액

물재생시설	중랑(성동), 난지(고양시), 탄천(강남), 서남(강서)	
혜택세대수 (300m이내 거주자)	12,845세대 (난지 없음)	
세수 감소 예상액	현 행 (50% 감면)	개정 후 (전액 감면)
	357백만원 ('08년 기준)	714백만원

다만, 안 제34조제1항제9호의 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규정은 당초 조례규칙에 설치 당시, 부칙으로 '2010년 12월 납기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용료 전액감면 건은 원활한 정수를 위해 서울시 정수전산시스템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포 후 시행까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월 주택 임대료, 의료비, 주민편익시설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유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하수도사용료의 추가 감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최홍규, 이남형 위원)

답변) 감면대상 금액이 소액으로 세입손실은 크지 않음. (송경섭 물관리국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34조제1항제9호의 호텔 및 숙박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
에 대해 현행 규칙과 동일하게 부칙으로 유효기간(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만 효력)을 설치하고, 동 개정안 공포후 시행시기를 2009년 9
월 납기 분부터 적용토록 부칙 신설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86
----------	-----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29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은 당초 조례규칙 설치 당시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으므로 개정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 개정안의 시행일을 서울시 징수전산시스템의 보완 기간을 감안하여 적용 시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행일은 서울시의 징수전산시스템 보완기간을 감안하여 2006년 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시행일 명시 (부칙 제1조 신설)
- 나. 제34조제1항제9호의 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은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유효기간 명시 (부칙 제2조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시장은 공익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인 경우: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 감면된 지역인 경우: 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10세계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면제 	<p>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개정안과 같음)</p>

9. 다음 각 목의 호텔 및 숙박
업소 : 사용료의 100분의 20
에 대하여 감면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
조에 따라 특1등급 및 특2등급
으로 결정된 호텔 : 2007년 1
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퍼
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호텔 중 가목 이외의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
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10퍼센트 이
상 인하한 경우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으
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
박업소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
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
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
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 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감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되어 수도요금 감면된 지역인 경우 : 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

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9. 다음 각 목의 호텔 및 숙박업소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 및 특2등급으로
결정된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호텔 중 가목 이외의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
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10
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으로서 시
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
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
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
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
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

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p> <p>제34조(감면) 시장은 공익 그 밖에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p> <p>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 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인 경우: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 감면된 지역인 경우: 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1조제1 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 자인 경우: 10세제 콤퍼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면제 9. 다음 각 목의 호텔 및 숙박업소: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 및 특2등급으로 결정된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제2호의 호텔 중 가목 이외의 호텔 : 2007년 1월 1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하수도사용료 검침일 현재 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10퍼센트 이상 인하한 경우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 숙박업소

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로 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장에게 신고

하역야 한다.

⑤ 군부대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하수도 사
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의 연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9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4조제1항제9호는
2010년 12월 납기 분까지 효력을 가진다.